

서울고등법원 2016. 3. 25 선고 2015나205236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6. 3. 25 선고 2015나205236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17 선고 2014가합59409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, 항소인 D

변론 종결 2016. 3. 11.

판결 선고 2016. 3. 25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8. 17. 선고 2014가합59409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[청구취지]

1.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3. 12. 23.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6쪽 2번째 줄의 '갑 13, 15호증'을 '갑 7, 13, 15호증'으로, ② 제1심판결 제8쪽 12번째 줄의 '피고 B' 앞에 '증여계약 체결 직후 B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던 점,'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상환

판사이영창

판사조찬영